
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
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1.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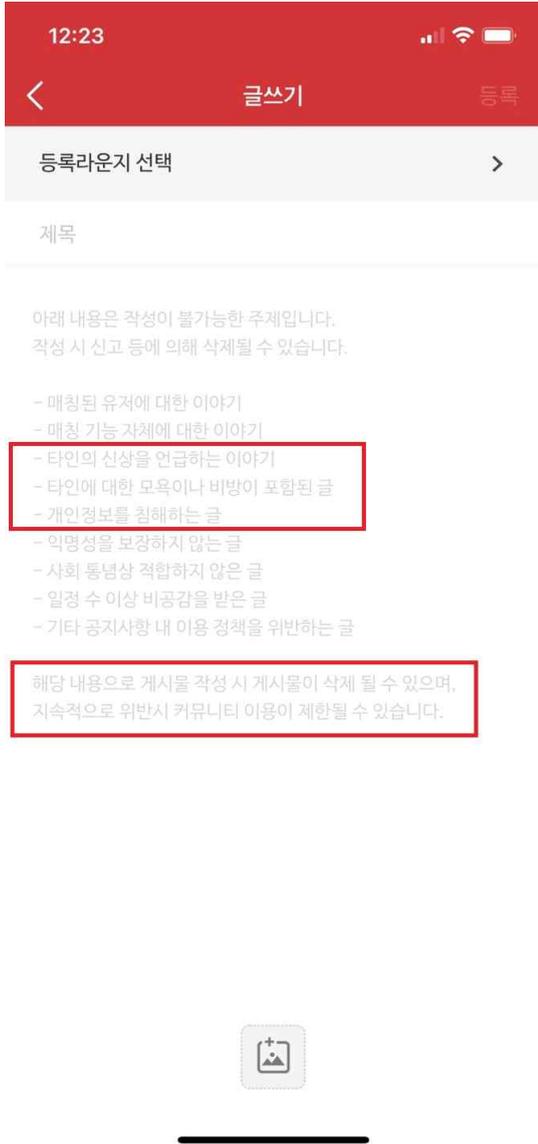
주식회사
에이치소사이어티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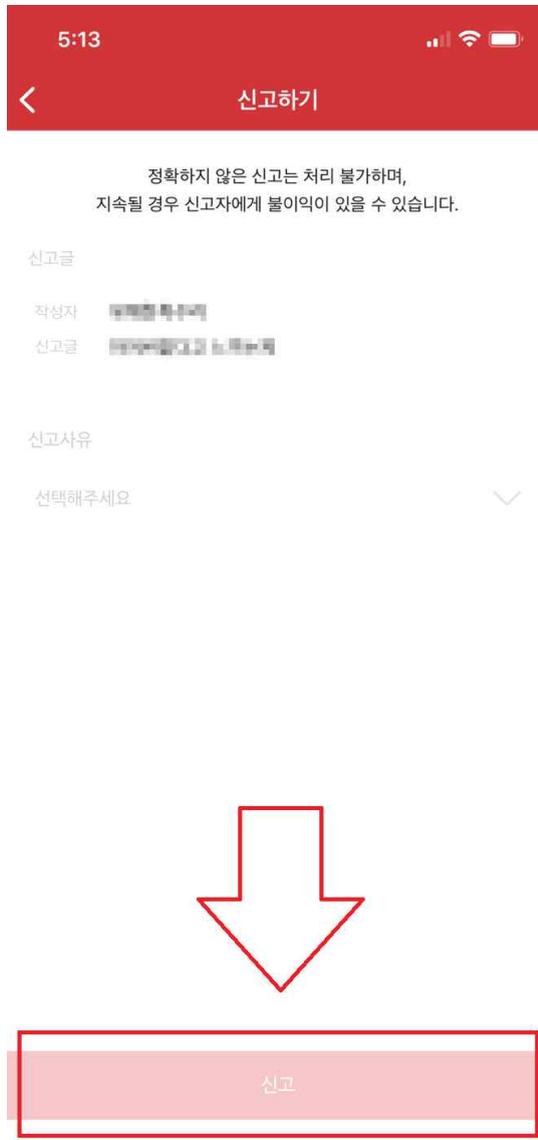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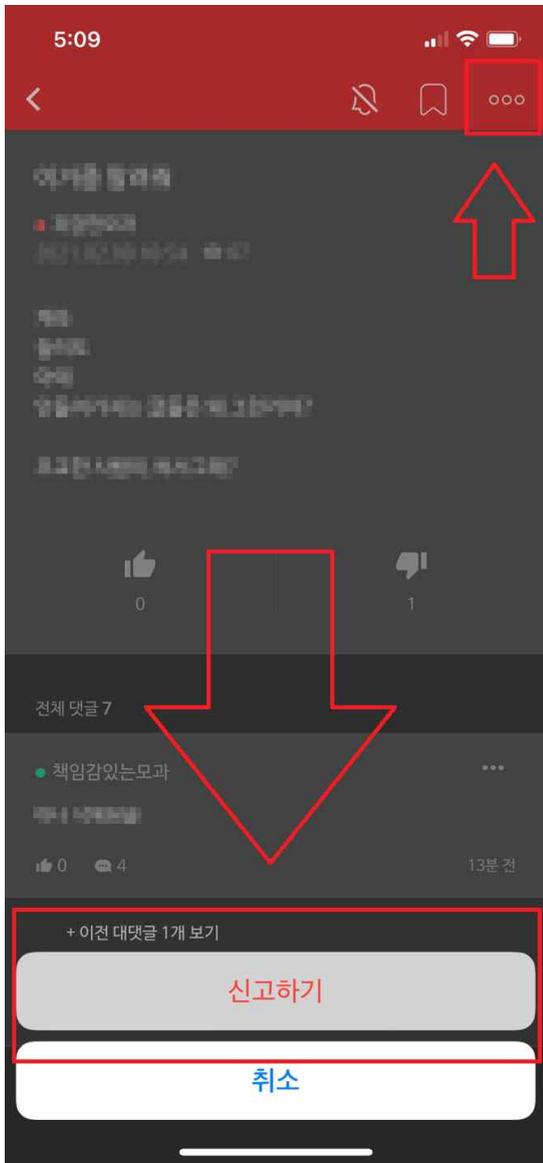
2021년 1월 18일

-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시스템(신고에 의한 자동삭제조치)구축 : 2020년 ~ 현재

<게시물 등록단계에서의 경고문구>



<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 절차>



<신고접수 후 자동 조치 결과>



-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 : 2020년 12월

<관련 규정사이트에 고지 : <https://www.skypeople.me/include/rule.do>>

제10조 이용자의 의무

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신청자는 반드시 동 약관 '제2조'에 기재되어있는 인증을 거친 해당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거나 해당 직장 등에 재직중인 직장인이어야 합니다. 또한 작성하는 개인 정보와 프로필(사진과 간단한 소개 등)은 사실이어야 합니다.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변경되는 개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. 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(신청자) 본인의 책임입니다.

- a. 이용자(신청자)가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는 진실하여야 하며 만일 이용자(신청자)가 허위 기타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- b. 회사는 이용자간의 만남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,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되기에 신중히 검토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
- c. 이용자는 항상 '스카이프플'의 공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. 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.
- d. 이용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 - 1. '스카이프플' 사이트의 이용자(신청자)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
 - 2. '스카이프플' 홈페이지 등을 해킹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 (예: 해킹 또는 바이러스 유포, 디도스 공격 등)
 - 3. 타인의 휴대전화번호,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는 행위.
 - 4. 개인 정보를 허위 또는 타인의 것으로 등록하는 행위.
 - 5. 타 이용자에 대한 비방 또는 인격모독을 하거나 이를 작성 및 유포하는 행위.
 - 6. 공공질서,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저작물을 등록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.
 - 7. 사이트 내에서 불법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행위.
 - 8. 음란물 및 동영상상을 게시하는 행위.
 - 9. '스카이프플'이 제공하는 프로필 및 개인 정보(사진, 닉네임, 나이, 간단한 소개 등)을 무단 이메일 화신, 무단 캡처 또는 무단 저장하는 행위 및 이를 유포하여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
 - 10. '스카이프플' 서비스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'스카이프플'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
 - 11. '스카이프플' 내 익명게시판 등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쾌한 게시물을 작성, 논란을 일으키거나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유해한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회사가 정한 게시판 이용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.
 - 12. 기타 '스카이프플' 서비스 및 제반 설비를 이용하여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하거나, 이외에 스카이프플 운영팀(관리자)의 판단하에 이용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위.

이상 위 d항 각 호 해당 사항에 명시한 내용을 위반한 이용자는 강제 이용 중단 및 영구 이용 중단 처리될 수 있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3. 불법 촬영물 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- 대상기간 : 2020년 12월 10일 ~ 12월 31일

구분			1	2	3	4	5	6	7	8	9	10	11	12	계	
신고 접수	신고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											0	0	
		기관, 단체													0	0
		소계													0	0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0	0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0	0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0	0
처리 결과	자체 삭제, 접속차단													0	0	
	해당없음													0	0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, 차단													0	0
		해당없음													0	0
		각하 등													0	0
	소계														0	0
	삭제, 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0	0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0	0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0	0	

4.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-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

- ①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접수 및 게시글 확인
- ② 해당 게시글 삭제 및 보관
- ③ 게시글 등록자 계정 동결(접속 차단)
- ④ 게시글 등록자에 대한 관련법 고지 및 경고/제재
- ⑤ 신고자가 있을 경우 처리결과에 대해 고지
- ⑥ 불법촬영물 등 유통바이트 책임자에게 처리결과가 보고

- 기타 운영관련 사항

-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
-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조치를 위해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간 서비스관리 및 관련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 - 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.

5.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분	정	부
성명	안상민	박지원
부서	임원	유해안전보호팀
직책	이사	팀장
지정일	2020.12.1.	2020.12.1

6.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교육실시	2020.12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안내	유해안전보호팀원 7명	1시간	자체교육